

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972
----------	------

2025년 9월 1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년 8월 11일, 박춘선 의원 외 32명
- 나. 회부일자: 2025년 8월 14일
- 다. 상정일자: 제33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5년 9월 1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박춘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줍깅은 환경보전과 건강 증진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환경 운동으로 시민 참여와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. 이에 줍깅문화의 사회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하여 민간 참여 기반을 넓히고자 함.
- 또한, 줍깅 활동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과의 협력 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, 지속가능한 줍깅 문화 정착을 도모함.

나. 주요골자

- 기업의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활동과의 연계 및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(안 제7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폐기물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4. 검토보고 요지

- 서울시는 동 조례 제정('23.5.22.) 이후 시민과 함께 일상 속 줍깅을 통해 환경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, 줍깅주간(9월 셋째주 토요일이 포함된 주)¹⁾을 운영하고 있고 자치구 클린데이(매월 셋째주 수요일)²⁾와 연계하여 줍깅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.
- 안 제7조는 기업의 사회공헌·자원봉사 활동 등에 줍깅이 활용되도록 시장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시민 참여 확대 및 환경보호 실천 문화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.

아울러, 서울시는 줍깅 활동의 확산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·단체·시민과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, 성과 공유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높여야 할 것임.

1) 줍깅활성화를 위한 2024. 서울시와 함께하는 줍깅주간 추진계획(생활환경과-13089, '24.8.30.).

2) 2024년 9월 서울클린데이 줍깅주간 추진 협조(생활환경과-13359 '24.9.4.)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협력체계 구축)”을 “(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구축할 수 있다”를 “구축할 수 있고, 기업의 사회공헌 및 자원 봉사 활동 등에 줍깅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읍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	제7조(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) ----- ----- ----- 구축할 수 있고, 기업의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활동 등에 읍강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